

##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

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5월 12일
- 회부일자 : 2004년 5월 12일

### 3. 제안이유

-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설치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2004년1월1일 이관운영됨에 따라 자산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5조2항에 의거 도의회 의결
-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자산을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시설 장비 등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

### 4. 주요골자

- 자산출연 총괄

(단위 : 원)

| 품 목       | 취득가액        | 감가상각비       | 잔존가액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장비 등 322종 | 952,917,423 | 398,618,417 | 554,299,006 |

- 1999년12월부터 도입된 컴퓨터장비 및 시설, 비품 등으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 이관시 이관 받은 물품이 포함됨.

## 5. 검토의견

-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을 검토한 바

이는,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업무가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고,

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대형컴퓨터 등 장비와 비품을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 
도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 임 :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자산출연안**